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 
제244회 임시회

# 검 토 보 고 서

2020. 10. 26.(월)

| 순서 | 검 토 안 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 안               |
|----|---|-------------------|
| 1  |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부자 예우 및<br>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<br>조례안 | 강명숙<br>의원<br>외 9명 |



**행정건설위원회**

(전문위원 유준상)

#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”

## 검 토 보 고

(보고자 : 전문위원 유준상)

### 1. 제안경위

- 제안자 : 강명숙 의원 외 9명
- 제안일 : 2020. 10. 20.
- 회부일 : 2020. 10. 20. (의안번호 : 20 - 154)

### 2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마포구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에 대한 예우의 근거를 마련하고,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.

### 3. 주요내용

- 목적, 정의 및 적용범위(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)
- 구청장의 책무(안 제4조)
- 기부증서의 발급 및 기부자 예우(안 제5조 및 제6조)
- 기부심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(안 제7조 및 제8조)
-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해촉, 위원장의 직무 등  
(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)
- 회의, 의견청취 등(안 제12조 및 제13조)

## 4. 관계법령

-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## 5. 검토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강명숙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,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- 본 제정조례안은 총 14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에 대한 예우의 근거를 마련하고,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주요내용으로는  
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필요한 사항과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목적, 정의, 적용범위에 대한 내용임.
- 안 제6조에는 기부자 예우에 관한 내용임.
  - 특정장소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여 기부자 명단 부착·보존
  -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
  - 구청장 표창장·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
  -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,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명단 공지 등

○ 안 제8조에는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을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내용임.

○ 검토의견으로는

본 제정조례안은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필요한 사항과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명시함으로써, 마포구와 연계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, 마포구사회복지협의회,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에 금전 및 물품을 지원한 기부자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기본적인 수량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계층 지원을 위한 마스크 기부자 등을 포함한 개인이나 단체를 예우를 함으로써 기부자의 자존감 부여, 기부문화 확산, 기부금품 관리의 투명성 제고 등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함으로써 자발적인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기부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본 제정조례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